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94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4881호	조정훈의원	2024.10.24.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12.18.)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6052호	박성준의원	2026.1.1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2.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6307호	문정복의원	2026.1.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2.19.)
	제16680호	김대식의원	2026.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2.19.)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3. 10.)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한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상한 내에서 범죄의 경중 및 재범우려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함(안 제16조제5호·제6호·제8호, 제48조제2호)

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을 재교부할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
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을 한국
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2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로, “보육정책”을 “영유아 중심의 보육·교육 정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보육·교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0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8호”를 “제2항제9호”로 한다.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건강·정서·심리·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제16조제5호 중 “20년”을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20년이”를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0년이”를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 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보육교직원의 제46조·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제6호·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

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u>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u>) ① <u>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u>을 설립한다.</p> <p>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u></p> <p>2. <u>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8조(<u>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u>) ① <u>영유아보육·교육 서비스</u>----- ----- <u>영유아 중심의 보육·교육 정책</u>----- <u>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u>-----.</p> <p>② ----- -----.</p> <p>1. <u>영유아의 보육·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u></p> <p>2. <u>어린이집,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u> ---- <u>보육·교육 서비스</u> -----</p> <p>3. <u>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 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u></p> <p>4. <u>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u></p> <p>5. <u>영유아의 신체·건강·정서·심리·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u></p>

<신 설>

<신 설>

3. ~ 7. (생략)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10. ~ 14.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5. -----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

⑥ ----- 제2항제9호의-----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격사유) -----

-----.

1. ~ 4. (생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 -----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7. (현행과 같음)

지 못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

<p>3. ~ 5. (생략) ② · ③ (생략)</p>	<p><u>다)</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